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나695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 피항소인 N 주식회사(변경전: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소영진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7.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21232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3. 14.자 C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E 터미널 소팅시스템 설비 추가공사대금 101,805,000원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01,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C은 2014. 9.경 독일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G센터에 자동분류기 등 설비를 공급받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2014. 9. 2.경 D과 계약금액을 24,859,016,916원으로 하는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C의 몫은 13,350,000,000원이었고, C은 2014. 10.경부터 위 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에 착수하여 2015. 12. 31.경 공사를 마쳤으며, 2016. 2. 5.경까지 D으로부터 13,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0. 1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제어시스템 공사를 공사대금 1,70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422,716,654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71호로 C을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2017. 5. 16. 열린 조정기일에서 'C이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2017. 6.부터 2020. 2. 28.경까지 매월 말일에 3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절차 역시 종결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머1877).

3) C은 2017. 9. 1. D을 상대로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2201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3. D으로 하여금 C에게 329,890,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D은 위 판결금 중 288,522,811원¹⁾ 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62,455,534원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가압류, 추심명령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30524호로 이를 집행공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9. 6. 19. J로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원고는 채권 원금 465,030,600원 중 81,497,225원을 배당받아갔다.

나. C의 채권양도 및 공탁금의 출급 등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135,74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지급을 위하여 각 발행일을 2016. 3. 29., 지급기일을 2016. 9. 30., 2016. 12.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6년 제209, 210호로 공증하였다.

2)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2. 16. 채권추심전문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추심성공수수료는 각 회수금액의 20%, 신용조사수수료는 각 30만원으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17. 3. 14. C으로부터 C이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갖는 추가공사대금채권 101,805,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위임에 따라 2017. 3. 20.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2018. 3. 21.경 D에 송달되었다.

4)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후인 2017. 9. 1. C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2201호로 제기하였고,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가. 3)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에 D은 피고에게 101,805,000원의 변제를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지연이자 등의 추가지급을 구하며 그 수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8. 12. 10.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4232호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1,805,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을 갖고 있고 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채권 원금의 약 30%)만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소기업은행장 및 O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약 857,893,666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의 합계는 최소 5,883,311,726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 1)항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인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할 경우 기타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혹은 가압류되어 있던 미수금 채권이 대부분이었고, 당시 C이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특허권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 증명된 바가 없다.

② C은 2015. 12.말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30여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5년 말경부터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물품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C이 지급받은 전체공사대금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 및 피고 등이 보유한 채권액은 그 액수가 적은 편이다),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미납된 것이 많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③ C은 2017. 1.경 원고, 피고 외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그 채무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 등이 주최하는 채권단회의가 개최되었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I도 위 채권단 회의에 참여하였다.

④ C은 2017. 1. 30.경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내역, 미수금 내역 및 2018년 3월경까지의 상환 계획이 담긴 ‘수정_회의 자료<안>’(갑 제9호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위 자료에 담긴 상환계획에 대하여 피고는 동의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보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하자 C의 대표이사였던 P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채권단회의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산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사실상 이 사건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하여 담보가치가 가장

높은 책임재산이었던 점2), ②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은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자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점, ③ C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계속하려는 등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오히려 C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피고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④ C의 일반채권자들은 원고, 피고 및 위 채권단회의에 참가한 업체들을 비롯하여 여럿 있었는데, 그중 유독 피고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의 채권이 전체 하도급업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채권에서 피고가 양수해간 몫은 약 27%에 달한다), ⑤ C은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직후인 2016년경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7년경 개최된 채권단회의의 일원으로 위 회의에 참여하였던 피고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C의 자금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채권자 중 유일하게 피고에게만 담보가치가 높은 이 사건 채권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행위는(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I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I가 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채권양수를 통해 D를 직접 채무자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와 C이 직접 의사연락을 한 적이 없고, I도 추심하는 과정에서 C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C의 총 자산은 8,488,000,000원, 매출액은 11,754,000,000원, 영업이익은 399,000,000원, 순이익은 659,000,000원인 사실, 2015. 12. 31.자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C의 기업신용등급은 b-4) 로 평가되었으며 총 2건의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무불이행 정보로 등록된 정보는 ‘총 0건’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9,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K, L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① 피고는 I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고 본인은 직접 C과 의사연락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C에 대해 갖는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I에게 위임한 이상, I는 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C이 2017. 1. 10. 및 같은 달 23.에 각 추심금 1,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I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이 130억 원이 넘는 돈을 D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의 채권 추심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변제가 계속하여 유예되어 결국 I에 그 추심을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I는 이 사건 채권 이외에는 달리 담보가치 있는 C의 자산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해행위가 2017. 3. 14.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C의 2015. 12. 31.자 재무상태가 피고의 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I 담당 직원 L은 2017년 1월에 채권단회의에 참석하여 C의 당시 자산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압류한 C의 채권액에서 전액을 추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할 무렵 C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여 주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C의 변제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자신의 채권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C이 이를 수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설령 C의 변제계획안이 C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C이 부담하고 있던 임금 채무, 퇴직금 채무, 하도급 채무 등을 모두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그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것인만큼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상당액을 출금 받아 간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D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양도대상인 채권이 소멸하여 그 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이 사건 채권양도액)인 101,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양도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

- 1) 판결금에서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 2)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D이 그 성립여부를 다투고 있던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가 시공되면 공사업자는 추가공사대금채권을 갖게 되는 것인바, C이 D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판결문(갑 제3호증)에 따르더라도 C이 추가공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다만 D의 상계항변 등에 따라 C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공제가 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피고는 I가 채권추심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자신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C의 재무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위 b- 등급의 의미는 현재시점에서는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